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-9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- 1)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.

### 나. 시설의 설치(안 제2조)

- 1)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명칭,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구청장이 고시.

### 다. 관리·운영의 위탁 등(안 제4조)

- 1)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시설관리만 위탁할 경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.

### 라. 수탁자의 선정(안 제5조)

- 1) 수탁자선정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,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.
- 2)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.

**마. 운영지원(안 제7조)**

- 1)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.

**바. 지도·감독(안 제8조)**

- 1)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·검사할 수 있으며, 시정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.

**3. 조례안 : 따로붙임**

**4. 예산조치 : 관련 예산 편성**

**5. 참고사항**

- 가. 입법예고(2011.10.20~11.9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11.15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설의 설치 등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명칭,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고시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관리·운영의 위탁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, 장애인, 아동·청소년 보호시설 등(사회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관리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

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수탁자의 선정) 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.
- ②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, 그 위원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.
- ③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·집행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.

제7조(운영지원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 · 감독)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,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  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탁의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  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  3.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제10조(시설관리 등)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 · 운영 위탁기간이 종료 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·위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.